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생활폐기물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폐기물 공공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각각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오염집중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미세먼지 저감 장비 운영 및 검·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유역·지방환경청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사 5명)을 증원하고,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통합허가제도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7명)을 증원하며, 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기환경관리단을 각각 신설하면서 대기오염 총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4급 또는 5급 3명, 6급 6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청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며, 대구지방환경청에 대기오염 총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감시·환경범죄수사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의 정원 15명(6

급 2명, 7급 5명, 8급 8명)을 환경부로 재배정하며, 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연환경정책실 1개 과(통합허가제도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처 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업무 추진 인력 1명(농식품부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안전종합상황실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나군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녹색전환정책과·녹색산업혁신과·녹색기술개발과·통합허가제도과·환경교육팀·자연생태정책과·생물다양성과·자연공원과·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과·자원순환정책과·폐자원관리과·자원재활용”을 “녹색전환정책과·녹색산업혁신과·녹색기술개발과·통합허가제도과·환경교육팀·자연생태정책과·생물다양성과·자연공원과·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과·자원순환정책과·폐자원관리과·생활폐기물과·자원재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 중 “수립”을 “수립 총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폐기물”을 각각 “사업장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 및 제20항을 각각 제20항 및 제2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분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수출입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 신고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폐지 등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7.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공공비축 사업에 관한 사항
8.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12호 중 “해수담수화”를 “해수민물화”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총무과·환경관리국·유역관리국·화학안전관리단”을 “총무과·환경관리국·유역관리국·화학안전관리단·대기환경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대기환경관리단을 제외한다.

제27조제4항제11호 중 “대기·폐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의5 중 “배출허용총량 이전”을 “자발적 협약”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은)”을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관리과장에 한하여)”로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대기환경관리단) ① 대기환경관리단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도 시행계획 승인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3.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역별·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대기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6.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7.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확인

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10.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11.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

12. 악취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확인

제31조의3제2항제16호의2 중 “특정경유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의4부터 제16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4.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확

인 등 사후관리

16의5.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16의6.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

16의7. 악취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확인

제33조 단서 중 “제34조제4항제9호, 제10호”를 “제34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한다.

제34조제4항제7호 중 “기술지원”을 “기술적·재정적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2.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

23. 악취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확인

제38조의2제4호 중 “및 지방환경청:”을 “:”로, “화학물질관리과”를 “대기환경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환경청 : 화학안전관리단 및 화학물질관리과

제43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로, “2021년 2월 28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①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환경부에 둔다.

④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별표 6 중 총계 “593”을 “612”로 하고, 일반직 계 “587”을 “606”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3”을 “24”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6”을 “25”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94”를 “9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4”를 “97”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3”을 “58”로,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를 “22”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591”을 “6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85”를 “604”로 하

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3”을 “24”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
사무관 “28”을 “27”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
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99”를 “101”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다음에 “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환경주사·시설
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3”을 “96”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
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4”를 “59”
로,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
를 “22”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387”을 “3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87”을 “390”으로 하
며,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
관 “28”을 “29”로,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40”을 “42”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33”을 “34”로 하고, 일반직 계 “33”을 “34”로 하며, 운
전서기보 1 다음에 “기록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11 중 총계 “617”을 “625”로 하고, 일반직 계 “617”을 “625”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
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4”를 “7”로, 행정주사·공업주사·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89”를 “95”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2”를 “64”로,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5”를 “50”으로, 행정서기보 “22”를 “23”으로, 행정서기
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7”을 “28”로, 공업연구
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8”을 “30”으로 하고, 전기운영서기보
1 다음에 “열관리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을 “2”
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617”을 “625”로 하고, 일반직 계 “617”을 “625”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
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 “4”를 “7”로, 행정주사·공업주사·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93”을 “99”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
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8”을 “70”으로,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
기 또는 시설서기 “50”을 “45”로, 행정서기보 “22”를 “23”으로, 행정서기
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2”를 “23”으로, 공업연
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8”을 “30”으로 하고, 전기운영서기
보 1 다음에 “열관리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13 중 총계 “304”를 “308”로 하고, 일반직 계 “304”를 “308”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46”을 “50”으로, 행정주
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5”를 “34”로, 행정서
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34”를 “32”로, 공업연구사·보
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8”을 “21”로 한다.

별표 14 중 총계 “306”을 “3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06”을 “310”으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50”을 “54”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2”를 “41”로,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29”를 “27”로,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8”을 “21”로 한다.

별표 15 중 총계 “64”를 “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4”를 “66”으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9”를 “11”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3”를 “4”로, 전기운영서기보 1 다음에 “열관리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6 중 총계 “65”를 “67”로 하고, 일반직 계 “65”를 “67”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0”을 “12”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3”를 “4”로, 전기운영서기보 1 다음에 “열관리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16의2 중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 3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3”을 삭제하며, 전산사무관 1 다음에 “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사무관 4”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3”을 “4”로,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16의3 중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 3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

무관 3”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3”을 삭제하며, 전산사무관 1 다음에 “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사무관 4”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3”을 “4”로,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17의3 중 총계 “117”을 “118”로 하고, 일반직 계 “117”을 “118”로 하며, 4급 이하 “114”를 “115”로 한다.

별표 17의4 중 총계 “98”을 “100”로 하고, 일반직 계 “98”을 “100”로 하며, 전문경력관 “30”을 “32”로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9조제1항 관련)

1. 환경부

평가대상 조직

조 직	정 원	평가기간
1) 생활환경정책실	1명 (고위공무원단)	2022년 1월 31일까지
2) 자연환경정책실 생활폐기 물과	1명 (5급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2. 환경부

평가대상 정원

업 무	정 원	평가기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유역· 지방환경청)	47명 (5급 1명, 6급 12명, 7급 1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6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3조 관련)

1. 제43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2

2. 제43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 또 는 시설사무관	1

3. 제43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

4. 제43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6
일반직 계	6

공업연구원 · 농업연구원 · 보건연구원 또는 환경연구원	2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4
5. 제43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자연환경정책실) ① ~ ⑤ (생략)	제6조(자연환경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자연환경정책실에 <u>녹색전환정책과 · 녹색산업혁신과 · 녹색기술개발과 · 통합허가제도과 · 환경교육팀 · 자연생태정책과 · 생물다양성과 · 자연공원과 · 국토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과 · 자원순환정책과 · 폐자원관리과 · 자원재활용과</u> 및 폐자원에너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교육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 <u>녹색전환정책과 · 녹색산업혁신과 · 녹색기술개발과 · 통합허가제도과 · 환경교육팀 · 자연생태정책과 · 생물다양성과 · 자연공원과 · 국토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과 · 자원순환정책과 · 폐자원관리과 · 생활폐기물과 · 자원재활용</u> -----
⑦ ~ ⑰ (생략)	⑦ ~ ⑰ (현행과 같음)
⑱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⑱ -----
1.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 <u>수립</u>	1. ----- <u>수립 총괄</u>
2. <u>폐기물</u> 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2. <u>사업장폐기물</u> -----

3. <u>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u> 4. ~ 9. (생략) <신설>	3. <u>사업장폐기물</u>----- ----- 4. ~ 9. (현행과 같음) <u>⑱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u>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분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u>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u> 3. <u>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u> 4. <u>폐기물 수출입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u> 5. <u>폐기물처리 신고자 관리에 관한 사항</u> 6. <u>폐지 등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u> 7. <u>재활용가능자원 등의 공공비축 사업에 관한 사항</u> 8. <u>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u> <u>⑳ · ㉑</u> (현행 제19항 및 제20항과 같음)	제9조(수자원정책국) ① · ② (생략) ③ 수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u>해수담수화 및 지하수·강변여과수 등 대체수자원에 관한 사항</u> 13. ~ 25. (생략) ④ · ⑤ (생략) 제25조(유역환경청) ① (생략) ② 유역환경청에 <u>총무과·환경관리국·유역관리국·화학안전관리단 및 환경감시단을 둔다.</u> <단서 신설> 제27조(환경관리국) ① ~ ③ (생략)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u>대기·폐기물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u> 12. <u>삭제</u> 13. <u>환경친화형 도로의 휘발성</u>	제9조(수자원정책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해수민물화</u> ----- ----- 13. ~ 25.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유역환경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u>총무과·환경관리국·유역관리국·화학안전관리단·대기환경관리단</u> ---. <u>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대기환경관리단을 제외한다.</u> 제27조(환경관리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폐기물</u> ----- ----- <삭제>
---	--	--	---

<u>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준수 여부</u> <u>에 대한 관리(한강유역환경</u> <u>청은 제외한다)</u>	
14. <u>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u> <u>관리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u> <u>경청은 제외한다)</u>	<삭 제>
15. <u>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u> <u>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u> <u>위반사항 점검·확인(한강유</u> <u>역환경청은 제외한다)</u>	<삭 제>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16의2. <u>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u> <u>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u> <u>도 시행계획 승인 및 추진실</u> <u>적 평가에 관한 사항(한강유</u> <u>역환경청은 제외한다)</u>	<삭 제>
16의3. <u>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u> <u>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u> <u>의 운영(한강유역환경청은 제</u> <u>외한다)</u>	<삭 제>
16의4. <u>특정경유자동차 연료품</u> <u>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u> <u>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u> <u>사항(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u> <u>한다)</u>	<삭 제>
16의5. <u>지역별·배출원별 총량</u>	16의5. -----

<u>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u> <u>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u> <u>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u> <u>한 지도·점검 등 대기환경개</u> <u>선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u> <u>청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u> <u>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u> <u>통합관리사업장 및 「대기관</u> <u>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u> <u>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u> <u>사업장 모두 포함되는 사업장</u> <u>에 대해서만 해당한다)</u>	----- ----- <u>자발적 협약</u> ----- ----- ----- ----- ----- ----- ----- ----- ----- ----- -----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3(대기환경관리단) ① 대 기환경관리단장은 <u>서기관·기</u> <u>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u> <u>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u> <u>·시설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u> <u>으로 보한다.</u>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u>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u> <u>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도</u> <u>시행계획 승인 및 추진실적</u> <u>평가에 관한 사항</u>

2.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3.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역별·배출원별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대기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6.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7.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확인
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10.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

제31조의3(기획평가국) ① (생략)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한다.

1. ~ 16. (생략)

16의2. 특정경유자동차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16의3. (생략)

<신설>

<신설>

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11.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

12. 악취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확인

제31조의3(기획평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6. (현행과 같음)

16의2. 자동차 -----

16의3. (현행과 같음)

16의4.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16의5.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u>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 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설 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u>
<신 설>	16의6. <u>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u>
<신 설>	16의7. <u>악취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확인</u>
17. (생 략) ③ ~ ⑤ (생 략)	1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관할구역) 직제 제46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 구역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 34조제4항제9호, 제10호, 같은 조 제5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6 항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천 광역시·경기도를 관할구역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0호 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 역시 및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33조(관할구역) ----- ----- ----- 제3 4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 ----- ----- ----- ----- ----- ----- -----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① ~ ③ (생 략)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시설의 현황조사 및 <u>기술지원</u>	④ ----- ----- 1. ~ 6. (현행과 같음) 7. ----- ----- <u>기술적·재정적 지 원</u>
8. 삭 제 9. ~ 20. (생 략) <신 설>	9. ~ 20. (현행과 같음) 21. <u>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 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 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설 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u>
<신 설>	22. <u>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관리</u>
<신 설>	23. <u>악취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확인</u>
⑤·⑥ (생 략) 제3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 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및 화학물질
관리과

<신 설>

5. (생 략)

제43조(한시정원) <신 설>

① (생 략)

<신 설>

②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

4. ----- : -----
----- 대기환경관
리단

5. 지방환경청 : 화학안전관리단
및 화학물질관리과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3조(한시정원) ① 통합환경관
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
을 환경부에 둔다.

③ (현행 제1항과 같음)

④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업무
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
월 31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
시정원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둔
다.

②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
병 방역 관리 -----

----- 2022년 12
월 31일-----

정원을 환경부에 두며, 별표 21
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
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농
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③ (생 략)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6]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93</u>	<u>612</u>	+19
·	·	·	
·	·	·	
일반직 계	<u>587</u>	<u>606</u>	+19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3</u>	<u>24</u>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보 건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 관	<u>26</u>	<u>25</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 ·통계사무관·사서사무 관 또는 환경사무관	<u>94</u>	<u>96</u>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 관	5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 설>	<u>1</u>	+1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 주사·전산주사·환경주 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 신주사	<u>94</u>	<u>97</u>	+3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 신주사보	<u>53</u>	<u>58</u>	+5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 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 통신서기	<u>14</u>	<u>22</u>	+8
·	·	·	
·	·	·	

[별표 7]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591</u>	<u>610</u>	+19
·	·	·	
·	·	·	
일반직 계	<u>585</u>	<u>604</u>	+19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3</u>	<u>24</u>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보 건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 관	<u>28</u>	<u>27</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 ·통계사무관·사서사무 관 또는 환경사무관	<u>99</u>	<u>101</u>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 설>	<u>1</u>	+1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 주사·전산주사·환경주 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 신주사	<u>93</u>	<u>96</u>	+3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 신주사보	<u>54</u>	<u>59</u>	+5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 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 통신서기	<u>14</u>	<u>22</u>	+8

.	.	.	
.	.	.	

[별표 8]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87</u>	<u>390</u>	+3
일반직 계	<u>387</u>	<u>390</u>	+3
·	·	·	
·	·	·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 기상연구관·보건연 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u>28</u>	<u>29</u>	+1
·	·	·	
·	·	·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 · 기상연구사·보건연 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40</u>	<u>42</u>	+2
·	·	·	
·	·	·	

[별표 10]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3</u>	<u>34</u>	+1
일반직 계	<u>33</u>	<u>34</u>	+1
·	·	·	
·	·	·	
운전서기보	1		
<u>기록연구사</u>	<u><신 설></u>	<u>1</u>	+1
·	·	·	

[별표 11]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17</u>	<u>625</u>	+8
일반직 계	<u>617</u>	<u>625</u>	+8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보 건사무관·환경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수석전문 관	<u>4</u>	<u>7</u>	+3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환 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89</u>	<u>95</u>	+6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환경주사보 또는 시 설주사보	<u>62</u>	<u>64</u>	+2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환 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55</u>	<u>50</u>	-5
·	·	·	
·	·	·	
행정서기보	<u>22</u>	<u>23</u>	+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환경서기보 또는 시 설서기보	<u>27</u>	<u>28</u>	+1
·	·	·	
·	·	·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28</u>	<u>30</u>	+2
·	·	·	
전기운영서기보	1	·	
<u>열관리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사무운영서기보	<u>3</u>	<u>2</u>	-1

[별표 12]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17</u>	<u>625</u>	+8
일반직 계	<u>617</u>	<u>625</u>	+8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보 건사무관·환경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수석전문 관	<u>4</u>	<u>7</u>	+3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환 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u>93</u>	<u>99</u>	+6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환경주사보 또는 시 설주사보	<u>68</u>	<u>70</u>	+2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환 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u>50</u>	<u>45</u>	-5
·	·	·	
·	·	·	
행정서기보	<u>22</u>	<u>23</u>	+1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환경서기보 또는 시 설서기보	<u>22</u>	<u>23</u>	+1
·	·	·	
·	·	·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28</u>	<u>30</u>	+2
·	·	·	
전기운영서기보	1	·	
열관리운영서기보	<u>1</u>	<삭 제>	-1
사무운영서기보	<u>3</u>	<u>2</u>	-1

[별표 13]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04	308	+4
일반직 계	304	308	+4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46	50	+4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5	34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34	32	-2
·	·	·	
·	·	·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8	21	+3

·	·	·	
·	·	·	

[별표 14]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06	310	+4
일반직 계	306	310	+4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50	54	+4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2	41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29	27	-2
·	·	·	
·	·	·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8	21	+3

·	·	·	
·	·	·	

[별표 15]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4</u>	<u>66</u>	+2
일반직 계	<u>64</u>	<u>66</u>	+2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 주사 또는 시설주사	<u>9</u>	<u>11</u>	+2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 기보	<u>3</u>	<u>4</u>	+1
·	·	·	
·	·	·	
전기운영서기보	1	·	
열관리운영서기보	<u>1</u>	<삭 제>	-1

[별표 16]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5</u>	<u>67</u>	+2
일반직 계	<u>65</u>	<u>67</u>	+2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환경 주사 또는 시설주사	<u>10</u>	<u>12</u>	+2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 기보	<u>3</u>	<u>4</u>	+1
·	·	·	
·	·	·	
전기운영서기보	1	·	
열관리운영서기보	<u>1</u>	<삭 제>	-1

[별표 16의2]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본문 관련)

사무운영서기보	<u>4</u>	<u>3</u>	-1
---------	----------	----------	----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	3	·	
<u>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u>			
<u>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u>			
<u>· 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신사무관</u>	<u><신 설></u>	<u>3</u>	+3
<u>행정사무관</u>	<u>3</u>	<u><삭 제></u>	-3
·	·	·	
전산사무관	1	·	
<u>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u>			
<u>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신 설></u>	<u>4</u>	+4
<u>방송통신사무관</u>	<u>4</u>	<u><삭 제></u>	-4
·	·	·	
·	·	·	
행정서기보	<u>3</u>	<u>4</u>	+1
·	·	·	
·	·	·	

[별표 16의3]

홍수통제소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단서 관련)

사무운영서기보	<u>4</u>	<u>3</u>	-1
---------	----------	----------	----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	3	·	
<u>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u>			
<u>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u>			
<u>· 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신사무관</u>	<u><신 설></u>	<u>3</u>	+3
<u>행정사무관</u>	<u>3</u>	<u><삭 제></u>	-3
·	·	·	
전산사무관	1	·	
<u>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u>			
<u>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신 설></u>	<u>4</u>	+4
<u>방송통신사무관</u>	<u>4</u>	<u><삭 제></u>	-4
·	·	·	
·	·	·	
행정서기보	<u>3</u>	<u>4</u>	+1
·	·	·	
·	·	·	

[별표 17의3]

국립생물자원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17</u>	<u>118</u>	+1
일반직 계	<u>117</u>	<u>118</u>	+1
·	·	·	
·	·	·	
4급 이하	<u>114</u>	<u>115</u>	+1

[별표 17의4]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98</u>	<u>100</u>	+2
일반직 계	<u>98</u>	<u>100</u>	+2
·	·	·	
·	·	·	
전문경력관	<u>30</u>	<u>32</u>	+2